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8

# 수 원 지 방 법 원

## 제 1 행 정 부

## 판 결

사 건 2020구합63079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21. 3. 18.

판 결 선 고 2021. 4.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19.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취득세 18,293,940원, 지방교육세 3,658,780원, 농어촌특별세 4,573,480원, 2013년 귀속 취득세 116,467,530원, 지방교육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8

세 6,655,280원, 농어촌특별세 8,319,100원, 2015년 귀속 취득세 813,380원, 지방교육세 46,470원, 농어촌특별세 58,09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 1. 처분의 경과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천주교의 기본 이념에 입각하여 국내외의 수녀양성교육, 진료, 보육, 전도, 기타 자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및 재산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의 부동산 취득

원고는 아래와 같이 별지1 명의신탁토지목록 순번 1 내지 30번 기재 토지(이하 '1 내지 30번 토지'라고 하고, 위 토지 전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1) 원고는 B를 상대로 [redacted]지방법원 2015가합71767호로 1 내지 12번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21.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이 2016. 5. 12. 확정되었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6. 8. 17. 위 토지에 관하여 '2010. 12. 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C를 상대로 [redacted]지방법원 2015가합71750호로 13 내지 20번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15.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이 2016. 4. 7. 확정되었다. 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8

에 따라 원고는 2016. 8. 17. 위 토지에 관하여 '2013. 3. 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D을 상대로 [redacted]지방법원 2015가합71743호로 21 내지 29번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8.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이 2016. 4. 30. 확정되었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6. 8. 17. 위 토지에 관하여 '2013. 3. 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E를 상대로 [redacted]지방법원 2015가단145661호로 30번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45661호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26.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이 2016. 5. 18.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6. 9. 22. 위 토지에 관하여 '2016. 9. 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취득세 납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아래 라.항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합계 204,620,88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원고는 2018. 11. 7. '이 사건 토지는 명의신탁한 토지로서 원고가 수탁자 명의로 최초로 취득할시 이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종교단체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납부금액 전액에 대한 경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19.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0,308,31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8

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154,312,570원에 대하여는 경정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순번 | 귀속연도 | 과세번호 | 세목 | 과세금액 | 경정금액 | 경정 거부금액 |
|---|---|---|---|---|---|---|
| 1 | 2010 | F | 취득세 | 64,028,770 | 45,734,830 | 18,293,940 |
| 2 | | | 지방교육세 | 3,658,780 | 0 | 3,658,780 |
| 3 | | | 농특세 | 4,573,480 | 4,573,480 | 0 |
| 4 | 2013 | G | 취득세 | 45,698,320 | 0 | 45,698,320 |
| 5 | | | 지방교육세 | 2,611,330 | 0 | 2,611,330 |
| 6 | | | 농특세 | 3,264,160 | 0 | 3,264,160 |
| 7 | | H | 취득세 | 70,769,210 | 0 | 70,769,210 |
| 8 | | | 지방교육세 | 4,043,950 | 0 | 4,043,950 |
| 9 | | | 농특세 | 5,054,940 | 0 | 5,054,940 |
| 10 | 2015 | I | 취득세 | 813,380 | 0 | 813,380 |
| 11 | | | 지방교육세 | 46,470 | 0 | 46,470 |
| 12 | | | 농특세 | 58,090 | 0 | 58,090 |
| 합계 | | | | 204,620,880 | 50,308,310 | 154,312,570 |

마. 원고의 조세심판청구 및 이에 대한 기각결정

원고는 2019. 1.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원고 소속 수녀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원고는 명의신탁 당시 체결하였던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고, 이후 확정판결 등을 이용하여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8

므로, 원고에게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속 수녀들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식재료의 공급원일 뿐 아니라 수녀들의 교육장소로도 사용되고 있으므로, 취득세가 면제되는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

3) 원고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즉 쌀과 채소를 재배하여 위 노유자시설과 장애인시설의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그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불성립하는지 여부[1)]

1)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한 토지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갑 제38 내지 4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1 내지 12번 토지의 전 소유명의자였던 B, 13 내지 20번 토지의 전 소유명의자였던 C, 21 내지 29번 토지의 전 소유명의자였던 D, 30번 토지의 전전 소유명의자였던 J는 모두 원고 소속 수녀들인 점, ② 위 수녀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그 매입비, 세금 등은 원고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B, C, D, E(E는 J로부터 30번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람이다)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위 상대방들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소속 수녀들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원고의 설립등기일은 1985. 5. 14.이므로,

1) 1 내지 12번 토지는 취득일이 2010. 12. 1.이므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 2항의 적용 여부가, 13 내지 29번 토지는 취득일이 2013. 3. 1.이고, 30번 토지는 취득일이 2015. 12. 1.이므로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 2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8

그 이전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19, 20, 27, 29번 토지의 경우에는 원고에게 당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할 권리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갑 제3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각 토지는 1956. 11. 19. 설립된 K단체가 수녀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원고가 K단체와 동일한지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적어도 K단체로부터 위 각 토지의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포함한 토지, 건물 및 재산의 관리권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를 위 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명의신탁의 유형

명의신탁약정이 3자 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로서,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84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갑 제2 내지 31호증)에는 그 등기원인이 모두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는 소속 수녀들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를 수녀들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계약명의자인 수녀들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아니라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가 명의신탁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8

구 지방세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에 의하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제1항),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제2항).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계약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명의수탁자와 체결한 명의신탁약정도 무효이어서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더라도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8414 판결 등).

원고는 위 판례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시행 이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 부동산실명법 이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던 이 사건에는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당해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등 참조)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원고와 수녀들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성립하여 원고가 수녀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은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8

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원고가 수녀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인한 것일 뿐인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취득을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녀들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당시 원고가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명의수탁자들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취득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2)]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2) 1 내지 12번 토지는 취득일이 2010. 12. 1.이므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여부가, 13 내지 29번 토지는 취득일이 2013. 3. 1.이고, 30번 토지는 취득일이 2015. 12. 1.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8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위 각 규정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 내지 단체가 당해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그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용의 범위는 당해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4708 판결 참조).

2) 갑 제5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우선 원고가 종교 자체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원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원고의 목적은 'K단체 기본이념에 입각한 국내외의 수녀양성교육, 진료, 보육, 전도 기타 자선사업'이 아니라 이를 위하여 필요한 부수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 건물 및 재산의 관리와 공급'이기 때문이다.

② 원고를 종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 종교사업의 본질적 내용인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8

라, 이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시설도 아니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종교교육의 장소로도 사용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자료는 없다).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농작물 중 일부를 소속 수녀들에게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종교사업에 부수되는 정도를 넘어서 그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3)]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본문은 '사회복지사업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L협회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본문은 '사회복지사업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L협회가

3) 1 내지 12번 토지는 취득일이 2010. 12. 1.이므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여부가, 13 내지 29번 토지는 취득일이 2013. 3. 1.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의 적용 여부가, 30번 토지는 취득일이 2015. 12. 1.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8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해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의 의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그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용의 범위는 당해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고(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 사회복지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우선 원고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원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원고의 목적은 '기타 자선사업'이 아니라 이를 위하여 필요한 부수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 건물 및 재산의 관리와 공급'이기 때문이다.

② 원고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8

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등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 위와 같은 사회복지사업의 본질적 내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쌀과 채소를 재배하여 노유자시설과 장애인 시설의 운영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농작물 중 일부를 소속 수녀들에게 제공한 사실(갑 제42호증의 1, 제43호증의 1, 제44호증의 1), 천주교 신자인 남성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게 하여 도지 명목으로 쌀을 제공받는 등 수익사업을 한 사실(갑 제33호증) 등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8

별지1

## 명의신탁토지목록

| 순번 | 종전토지 | | | 명의신탁일 | 최초 매도인 | 수탁자 | 관련등기 | 소유권취득 방법 | 비고 |
|---|---|---|---|---|---|---|---|---|---|
| | 지번 | 지목 | 면적 | | | | | | |
| 1 | | 전 | 2,073 | 1990.11.20 | | | 갑 제2호증 | | |
| 2 | | 전 | 545 | 1987.05.29 | | | 갑 제3호증 | | |
| 3 | | 전 | 1,130 | 1986.03.10 | | | 갑 제4호증 | | |
| 4 | | 전 | 914 | 1986.01.28 | | | 갑 제5호증 | 시효취득([redacted]지법 2015가합71767) | |
| 5 | | 전 | 235 | 1986.01.28 | | | 갑 제6호증 | | |
| 6 | | 전 | 1,795 | 1990.11.20 | | | 갑 제7호증 | | |
| 7 | | 전 | 26 | 1987.05.09 | | [redacted] (3/4지분) | 갑 제8호증 | | |
| | | | | 1990.11.10 | | [redacted] (1/4지분) | | | |
| 8 | | 전 | 721 | 1998.10.12 | | | 갑 제9호증 | | |
| 9 | | 전 | 568 | 1986.03.10 | | | 갑 제10호증 | | |
| 10 | | 전 | 216 | 1986.03.10 | | | 갑 제11호증 | | |
| 11 | | 전 | 2,034 | 1987.01.05 | | | 갑 제12호증 | | |
| 12 | | 전 | 2,102 | 1987.01.26 | | | 갑 제13호증 | | |
| 13 | | 답 | 2,876 | 1987.01.26 | | | 갑 제14호증 | | |
| 14 | | 답 | 774 | 1987.01.28 | | | 갑 제15호증 | | |
| 15 | | 답 | 182 | 1987.01.28 | | | 갑 제16호증 | | |
| 16 | | 답 | 2,350 | 1987.01.26 | | | 갑 제17호증 | 시효취득([redacted]지법 2015가합71750) | |
| 17 | | 답 | 1,609 | 1985.10.08 | | | 갑 제18호증 | | |
| 18 | | 답 | 106 | 1985.10.08 | | | 갑 제19호증 | | |
| 19 | | 답 | 480 | 1984.10.20 | | | 갑 제20호증 | | |
| 20 | | 답 | 955 | 1985.02.11 | | | 갑 제21호증 | |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8

| | | | | | | | | | |
|---|---|---|---|---|---|---|---|---|---|
| 21 | | 답 | 1,118 | 1985.09.19 | | | 갑 제22호증 | 시효취득([redacted]지법 2015가합71743) | |
| 22 | | 답 | 410 | 1985.09.19 | | | 갑 제23호증 | | |
| 23 | | 전 | 2,472 | 1985.09.19 | | | 갑 제24호증 | | |
| 24 | | 답 | 667 | 1987.05.09 | | | 갑 제25호증 | | |
| 25 | | 답 | 1,353 | 1987.05.09 | | | 갑 제26호증 | | |
| 26 | | 전 | 2,228 | 1985.10.08 | | | 갑 제27호증 | 시효취득[redacted]지법 2015가합71743) | |
| 27 | | 전 | 1,065 | 1970.03.02 | | | 갑 제28호증 | | |
| 28 | | 전 | 774 | 1970.03.02 | | | 갑 제29호증 | | |
| 29 | | 답 | 3,977 | 1987.01.14 | | | 갑 제30호증 | | |
| 30 | | 답 | 1,431 | 1995.01.25 | | (09.7.6 [redacted]) | 갑 제31호증 | 시효취득([redacted]지법 2015가단145661) | |
| | | | 37,186 | | | | | |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8

별지2

##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第1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對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8

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L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8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L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8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끝.